

## 4 채무 및 부채

### 4-1. 통합부채 현황(시범)

- ☐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광산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13년	2014년	증감
통합자산	1,096	1,119	23
통합부채	26	28	2
유동부채	7	12	5
장기차입부채	3	2	△1
기타비유동부채	16	14	△2

- ▶ '14년 결산 순계기준
- ▶ 우리 광산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
- ▶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▶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▶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## 4-2. 지자체 부채 현황

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광산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3년	2014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095,540	1,118,856	23,316	
부채(B)	26,295	27,771	1,476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2.4	2.48	0.08	

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
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※ 2013,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(재무제표) 참조

### 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- 우리 광산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방공기업 부채 중 '직영기업'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'공기업 특별회계'의 부채로서 '4-2. 지자체 부채 현황(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)'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3년			2014년		
	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)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)
합 계		-	-	-	706	506	253
공사 공단	소 계	-	-	-	706	506	253
	광산구 시설관리공단	-	-	-	706	506	253

※ 2013년, 201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

### 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- 우리 광산구의 출자·출연기관은 없습니다.

### 4-5. 우발부채 현황

-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13년	2014년	증감
계		3,204	4,827	
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		-	-	
채무부담행위		-	-	
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-	-	
계약상 약정	재매입약정	-	-	
	매입확약	-	-	
	손실부담계약	-	-	
	책임분양확약 등	-	-	
	신하기관 차입금상환,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	-	-	
소송관련		3,204	4,827	

- ▶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상호 보증·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

※ '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. 결산서 서식(26. 우발채무 등) 참고

#### 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☐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광산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3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4년도 현재액 E=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	3,469	-794	-	794	2,675
일반회계		3,469	-794	-	794	2,675
기타 특별 회계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-	-	-	-	-
	골재채취특별회계	-	-	-	-	-
	기반시설특별회계	-	-	-	-	-
	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-	-	-	-	-
	주차장사업특별회계	-	-	-	-	-
기금	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	-	-	-	-	-
	수완호수공원관리기금	-	-	-	-	-
	사회복지기금	-	-	-	-	-
	여성발전기금	-	-	-	-	-
	재난관리기금	-	-	-	-	-
	식품진흥기금	-	-	-	-	-
	통합관리기금	-	-	-	-	-

※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(BTL 지급액 제외)

※ '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(원금 기준)

☞ 2014년 채무액은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 감소되었으며, 신규 지방채 미발행 및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갚아가고 있습니다.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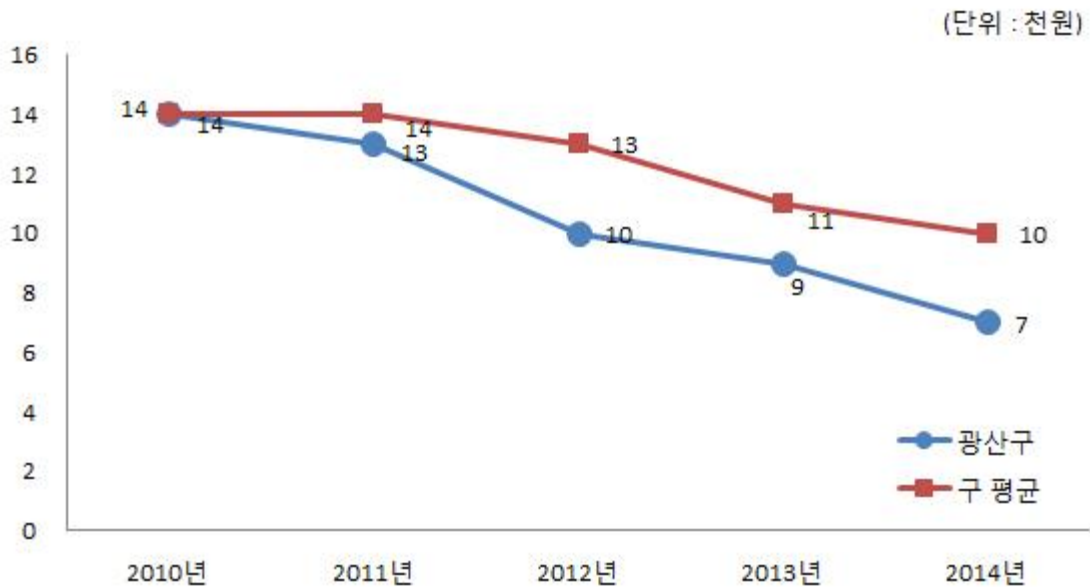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채무현황	5,267	4,742	4,017	3,469	2,675
인구수	363,239	375,509	385,101	392,875	397,281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14	13	10	9	7

▶ '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, 동종단체와 비교



☞ 2009년 신창동·하남동청사, 수완보건지소 건립 등으로 1인당 주민채무액이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함에 따라 주민 1인당 채무액이 7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.

#### 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0,100	8,100	7,100	2,500	2,600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 - \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총족 차환액
  - \*\* 일정요건총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% 이내이고, 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#### 4-8.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광산구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.

#### 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광산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.

---

●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
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●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
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---

#### 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(시범)

- ▣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15~'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▶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, 향후 수시공시 예정 ('15.12월 예정)

#### 4-11. 보증채무 현황

- ☐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광산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##### ❖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 출 결 산 액	300,451	318,842	364,125	413,054	446,049
보증채무현재액	-	-	-	-	-
비 율	-	-	-	-	-